L4ZPB368030PPPL001_1200001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601.3) 상품요약서

● 상품특성 및 전달정보

상품 특성	전달정보		
예금자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이란, 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 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부리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입니다.	최저이율보장 0.25%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부리이율 입니다.
보험료갱신형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	실손형 담보는 2개이상의 계약을 중복하여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1)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A1)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이륜자동차보험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601.3)에 가입하신다면,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외에도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사망, 골절 진단, 수술, 부상치료지원금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운전자 벌금Ⅱ(대인)」,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을 부담한 경우에도「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Q2)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2-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2-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3)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 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601.3)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
기간</th><th>보험료
납입기간</th><th>가입
나이</th></tr>
<tr><td>기본계약</td><td>·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80%이상)</td><td rowspan="3">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td><td rowspan="3">전기납</td><td rowspan="3">만 18세
~
70세</td></tr>
<tr><td rowspan="2">선택계약</td><td>·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사고유형별 차등보장)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등급미적용)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
(3㎝ 이상) 치료비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
(건) 파열 치료비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수술비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중대한 수술비
(1~3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이륜자동차 운전중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 운전자 벌금Ⅱ(대인)
· 운전자 벌금(대물)
· 운전면허정지일당
· 운전면허취소보장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 위로금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
(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 50%)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누수사고제외)
·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td><td></td><td></td><td></td></tr>
<tr><td></td><td>·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td><td>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td><td>전기납</td><td>만 20세
~
70세</td></tr>
</table>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

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가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구조

① 계약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5년만기	전기납	월납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 상품의 특이사항

①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가입금액 150 만원 기준> 상해등급 / 지급액 1급 150만원 2급 50만원 3급 50만원 4급 25만원 5급 25만원 6~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사고유형별 차등보장)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사고유형별,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차량단독사고를 제외한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가입금액 300 만원 기준> 상해등급 / 지급액 1급 300만원 2~3급 150만원 4급 150만원 5급 75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차량단독사고인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가입금액 150 만원 기준> 상해등급 / 지급액 1급 150만원 2~3급 50만원 4급 25만원 5급 25만원 6급 10만원 7급 10만원 8~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등급미적용)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깨짐,부러짐) 제외)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골절 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3㎝이상) 치료비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안면열상(3㎝이상) 등급표」에 정한 안면열상(3㎝)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 파열치료비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인대 힘줄(건) 파열 등급표」에 정한 인대 및 힘줄(건)의 파열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수술비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수술 등급표」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중대한 수술비(1~3급)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수술 등급표」에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 1회, 연간3회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창상봉합술(안면부) 치료비 (1일 1회, 연간3회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외) 치료비 (1일 1회, 연간3회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외,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피해자 사망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피해자 부상	이륜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7,000만원한도 · 20주이상 : 1억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이륜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이륜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5천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포함)(자기부담금5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1~7급 : 500만원 한도 · 8~11급 : 400만원 한도, · 12~14급 : 2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포함)(자기부담금50%)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	-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 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로 자기부담금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운전면허정지일당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가입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운전면허취소보장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각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단,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누수사고제외)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누수사고로 인한 대물 배상책임은 제외	대인, 대물 각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 50%)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누수사고제외)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601.3)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 입니다.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26년 1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1.70%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적용위험률 예시 >

(기준: 기본계약, 가정용 및 기타용도, 40세)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 발생률	0.000205	0.000205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상해1급, 가정용 및 기타용도,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납, 월납)

남자(%)	여자(%)
129.8	128.4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601.3)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 가입기준 : 남자 40세, 가정용 및 기타용도, 자가용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월납 30,000원

● 가입금액

- 기본계약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1,000만원
- 선택계약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1,0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15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수술비 1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6주이상부상) 1억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확대) 5천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사망) 2억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중상해) 2억원
  운전자 벌금Ⅱ(대인) 3,000만원,
  운전자 벌금(대물) 500만원,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 Ⅱ 포함)(자기부담금50%) 1500만원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시[주1)]		연단위 복리 1.70% 가정시[주2)]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원	20,637원	5.70%	21,967원	6.10%	21,967원	6.10%
3년	1,080,000원	410,404원	38.00%	421,887원	39.00%	421,887원	39.00%
5년	1,800,000원	801,859원	44.50%	833,812원	46.30%	833,812원	46.30%
7년	2,520,000원	1,195,176원	47.40%	1,258,318원	49.90%	1,258,318원	49.90%
10년	3,600,000원	1,714,215원	47.60%	1,845,159원	51.20%	1,845,159원	51.20%
20년	7,200,000원	3,473,234원	48.20%	4,030,688원	55.90%	4,030,688원	55.90%

주1)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는 당월 공시이율 (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0%)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2026년 현재 연단위 복리 2.5%)과 당월 공시이율 (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0%)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해약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0%)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주4) 상기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5)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2026년 현재 2.5%입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601.3)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